

의안번호	제817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5년 1월 10일

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의안 번호	8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1월 10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 대상범위가 다자녀가구(2자녀이상)포함한 도민 81만명*으로 확대되어 보건의료 취약계층 도민 수혜폭이 넓어지고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협과 체결된 정책자금 추가 확보
 - 누적 수혜자('24년말 기준) : 1,250명, 신청금액 : 32억원
 - ※ '23년 477명 / '24년 773명('23년 대비 62% ↑)
 - * 65세 이상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

2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 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융자를 받아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권자 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 :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
 -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 등 조례상 지원대상
- 융자금액 : 50억원(농협정책자금)
 - (현행) 25억원
 - (변경) 50억원
- 융자조건 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3. 참고사항

- 의료비후불제 추진상황 등 주요내용 불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5. 기타 : 해당없음

□ 필 요 성

-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

※ 수혜가능 인원 : 810,760명 (충북 전체인구 49.3%)

- 65세 이상 330,884, 기초생활수급자 47,061, 차상위계층 25,782, 국가유공자 6,634, 장애인 45,562, 다자녀가구 354,837

- 대상수술 : 14개 수술 및 시술

※ 임플란트, 치아교정, 슬관절, 척추, 심뇌혈관, 암, 소화기(담낭, 간, 위, 맹장), 호흡기, 골절, 산부인과, 비뇨기, 안과

- 참여병원 : 268개소(종합병원 13, 병원 19, 의원 236)

- 재원규모 : 25억원(농협 정책자금) ※ '25년 예산액(도비) : 310,935천원

- 신청수요가 재원규모 초과 시 관련절차(채무보증 확대, 추경예산 등) 걸쳐 재원규모 확대

- 지원방식 : 무이자 융자(대출 방식)

- 대출기관 : 28개소(농협중앙회, 시군지부)

- 대출대상 :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및 형제자매, 후견인*

* 본인거동 불가, 신용불량자 및 은행 연체채권 보유자 경우 대리 대출 가능

- 지원한도 : 1인당 50만원 ~ 300만원 * 자기부담금 한도 내

- 상환조건 : 최대 3년 무이자 분할상환(중도상환 수수료 無)

□ 그간 추진상황

- 의료비후불제 시행 : '23.01.09.
-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 확대(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연령제한 폐지) : '23.02.01.
- 의료비후불제 신용확인 절차개선 : '23.04.24.
※ 환자가 농협 직접 방문 신용정보확인서 발부 제출 → 환자가 도로 신용정보확인 신청위임도 → 농협 공문 확인
-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등 지원질환 확대(6개→14개질환) : '23.11.13.
- 지원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(다자녀가구) : '24.03.06.
- 다자녀가구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승인(보건복지부) : '24.08.05.
- 다자녀가구(2자녀이상) 확대 시행 : '24.09.27.
-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특별상 수상(지방시대위원회) : '24.11.07.
- 모든산모 분만의료비 등 산부인과 질환 확대 : '24.12.01.
- 서울시 의료비후불제 도입 공동 TF 구성 업무협약 : '24.12.23.
- 대상자 발굴 다각적인 홍보 추진(온오프라인 채널) : 지속

□ 추진실적

①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및 안정적 사업 운영

- 사업 신청현황 : 1,250명(32억원)

(‘24.12.31.기준, 단위 : 명)

대상별 (명)	계	기초수급자	65세 이상	장애인	국가유공자	차상위계층	다자녀
	1,250 (100%)	545 (43.6%)	456 (36.5%)	152 (12.2%)	53 (4.2%)	18 (1.4%)	26 (2.1%)
질환별 (명)	계	임플란트	치아교정	척추	슬관절	골절	심혈관
1,250 (100%)		959 (76.7%)	81 (6.5%)	70 (5.6%)	45 (3.6%)	24 (1.9%)	19 (1.5%)
		고관절	뇌혈관	암	소화기	호흡기	안과
		15 (1.2%)	13 (1.0%)	10 (0.8%)	9 (0.7%)	4 (0.3%)	1 (0.1%)

- 융자금 미상환율 : 1.3%(13명) ※ 복지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미상환율 89%

대출내역		미상환내역		미상환율
인원(명)	금액(천원)	인원(명)	금액(천원)	
982	2,503,181	13	27,162	1.3%

②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한 민간 의료기관 도정참여 확대

○ 참여의료기관 : 시행 80개소 → 現 268개소(188개소 ↑, 335% ↑)

(단위 : 개소)

구 분	협약 의료기관 (‘23.1.9.)	협약 의료기관 (‘23.6.20.)	협약 의료기관 (‘23.9.20.)	협약 의료기관 (‘23.12.29.)	협약 의료기관 (‘24.12.31.)
합 계	80	145	167	179	268
종합병원급	12	12	12	12	13
병 원 급	-	9	13	13	19
개인의원	68	124	142	154	236

□ 향후계획

- 대상자 발굴 및 도민 체감 위한 다각적인 현장 맞춤 홍보 전개
- 성과평가 통한 지원대상, 대상질환 등 수혜범위 지속 확대
- 시·군 및 의료기관 대상 의견수렴 통한 제도 개선 검토
 - 의료취약지 참여의료기관 제한적, 인근 타지역까지 확대 등
- 전국 확산 분위기 조성(서울시와 협력 등) 및 국가제도 반영

참고

의료비후불제 정책자금 현황

□ 정책자금 운영현황

(‘24. 12. 31./단위 : 명, 천원)

사업신청		대출실행	
신청인원	신청금액	대출인원	대출금액
1,250	3,215,701	982	2,503,181

(‘24. 12. 31./단위 : 명, 천원)

정책자금(A)	대출금액			대출가능액 (A-D)	비고
	총 실행액 (B)	상환액 (C)	대출잔액 (D=B-C)		
2,500,000	2,503,181	822,510	1,680,671	819,329	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“주채무”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

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

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1.>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용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,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,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채무보증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용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.